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 교육과정 준수 명시 등〉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83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승아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3.

3. 회부연월일 : 2024.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논술,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고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입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함)에 관하여는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어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에도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시험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수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

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입전형 전반에 관한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을 방지하고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8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교육과정 준수 명시 등(안 제10조의3)

개정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한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출제되도록 명시하고, 교육과정 준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3(대학수학능력시험)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1)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기준·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11조2)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과 제3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2) 제11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①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재, 입학전형으로서 수능에 대해서 이른바 ‘킬러문항³⁾’ 출제 여부 등이 문제되고 있고 사교육비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는 24학년도 수능시험('23.9월 실시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에는 첫째, “공정수능 평가자문위원회⁵⁾”를 도입하여 수능 출제전략 수립시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둘째, “출제점검위원회⁶⁾”를 도입하여 수능출제시 별도로 문항 점검을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학등의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고사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그 밖에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교육부는 이른바 킬러문항에 대해서는 지문이 과도하게 어렵거나 사교육을 통한 문제풀이 기술이 유효하여 문제풀이 과정상 공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정된 사례들이 있으며, 출제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판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임.

4) 사교육비 총액은 '19년 21.0조원에서 '23년 27.1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사교육 참여율도 '19년 74.8%에서 '23년 78.5%로 증가하였음.

5) 현장교사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원 내 구성(17명)

6) 교육청 추천을 받은 현장교사로 구성, 국·영·수·사·과 영역별 킬러문항 포함여부 점검, 점검위원 의견은 필수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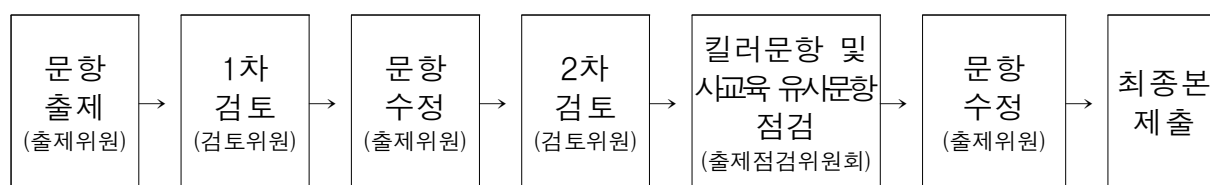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고7),

시험 실시 후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8).

한편, 수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위원단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시험 이후 교육과정 외 출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음.

수능 출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구성하여9) 출제준비 및 계획 수립 후 문항 출제 및 검토, 수정 등을 반복하며 킬러문항 및 사교육 유사문항 점검(출제점검위원회)을 거쳐 문항 수정이 이루어짐.

< 수능 출제 및 검토절차 개요 >



자료 : 교육부

7)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9) 합계 약 500명

개정안은 수능에 대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수능의 취지 및 대학등의 입학전형 규정과 비교시 개정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또한, 이를 위해 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기준·방법 등을 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사한 후 이를 수능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 수능 출제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기준, 방법을 구체화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¹⁰⁾, 실제 수능 출제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의 실효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교육부는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내에서 출제되고 있고, 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담기 어려움에 따라 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0)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의견

2. 선행교육·선행학습 유발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18조)

개정안은 현행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11)을 위반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 2. 제9조제5항12)을 위반하여 학교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13)을 위반하여 대학등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선행학습 유발행위¹⁴⁾에 대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
- 11)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3)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4) 선행교육·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8), 학교의 입학전형 등(§9), 대학등의 입학전형 등(§10), 대학별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설치·운영(§10조의 2)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⁵⁾.

<현행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행위 제재규정(개정안 관련)>

주체		의무		관련조문 (개정안)	기타 지도감독권한
교육관련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 (특수목적고 등)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	관할 교육감 제출	(제9조 제5항)	지도감독(제13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징계의결,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학생모집 정지조치 (제14조)
	대학등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제10조 제3항)	
학원, 교습소, 개인과의교습자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 금지		(제8조 제4항)	

개정안은 선행학습 유발행위 중 교육관련기관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에 관한 의무(초·중등학교는 관할 교육감 제출, 대학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의 위반, 학원·교습소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금지 의무의 위반시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신설하려는 것임.

15)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벌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특히,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동 법에 따른 교육 관련기관이 아님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시정·변경 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재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요청됨.

실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학원 등에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금지 조항 위반(제8조제4항)건이 '24년 103건인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개정안에 따른 의무위반행위 현황>

개정안제18조제1항	20	21	22	23	24
제1호 (제8조제4항 위반)	6건	69건	16건	60건	103건
제2호 (제9조제5항 위반)	-	-	-	-	-
제3호 (제10조제3항 위반)	-	-	-	-	-

자료 : 교육부

한편, 교육관련기관이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을 포함하여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일정한 조치¹⁶⁾를 취할 수 있으나, 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경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생각됨¹⁷⁾.

16)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교육부는 개정안 제1호에 대해서는 학원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고려하여 부과·징수권자도 교육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제2·3호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5

17) 이에 대해 이중처벌 우려 또는 현재 위반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나, 위법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정명령과 행정벌로서 과태료는 구분할 수 있고, 현재 부과되는 제재조치의 수준(징계, 학과 폐지, 학생 감축 등)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경미한 행위에 대한 행정벌의 필요성도 인정됨.